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19. 11. 26(화) 10:00

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
조례안
(복지교육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48호
- 나. 제 출 자 : 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19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19. 11. 15.

2. 제안이유

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,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보훈회관의 기능(안 제3조)
- 다. 운영협의회(안 제5조)
- 라. 운영위탁 및 시설의 관리위탁(안 제7조~제8조)
- 마. 양도금지 등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 - 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(정부의 시책)
- 나. 예산조치: 예산팀과 협의
- 다. 합의기관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2019. 10. . ~ 2019. 10. .(20일 이상)
- 2) 비용추계서: 별도첨부
- 3) 규제사전심사: 별도시행(기획예산과)
- 4) 부패영향평가: 별도시행(민원감사담당관)
- 5) 성별영향분석평가: 별도시행(여성가족과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제정 배경

본 조례안은 국가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금천구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2조와 제3조는 보훈회관 명칭 및 위치, 기능에 관한 사항을
- 안 제5조와 제6조는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및 운영방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
- 안 제7조에서는 보훈회관 운영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
- 안 제9조와 제10조는 보훈회관에 대한 양도금지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다. 검토의견

- 금 천구 보훈회관은 금천구 독산로24길 39(시흥 4동 소재)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, 주요시설은 사무실, 회의실, 체력 단련실, 주차장 등이며 2019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2020년 1월에 총 7개 보훈단체가 입주예정임.

○ 본 조례안은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정부의 시책)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금천구 보훈회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참고로, 현재 서울시 종로구 등 15개 자치구에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
관계법령

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자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